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안 건 명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
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11월 19일(월)

나. 제 출 자 : 김수진 의원 외 8명

3. 복지도시위원회 회부일자

2012년 11월 22일(목)

4. 제정근거

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(법률 제10516호,
2012. 3. 31 시행) 제4조

5. 검토의견

0 본 조례안의 제정은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·시행함으로써 마포구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.

0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고, 자살의 사전예방,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여 자살 관련 시책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.

따라서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및 아동·청소년·중년층·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등이 포함된 효율적인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안 제8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운영 그리고 적극적인 자살예방 및 상담 교육 등을 통하여 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특히 최근 급증하는 우리구 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자살발생에 대응하여 자살위험군에 대한 실시간 안전관리 및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, 생명존중 인식개선사업 추진 및 체계적인

케어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, 또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자살예방 대책에 보다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6. 관계법령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

[시행 2012.3.31] [법률 제10516호, 2011.3.30, 제정]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(이하 “자살위험자”라 한다)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,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